

모성 · 참정권 · 전쟁 그리고 국가

- 근대 일본 여성운동의 통시적 고찰*

이 은 경
(서울대학교)

❖ 국문초록

본고는** 근대 일본 여성운동의 궤적을 ‘모성’ ‘참정권’ ‘전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고찰하되,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일본이라는 ‘국가’와

* 이 연구는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08-362-B00006)

** 이 글은 2016년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춘계학술회의 <페미니즘 수용의 현황과 과제>에서 발표했던 「일본 근대 여성운동의 통시적 고찰: 모성 · 참정권 · 전쟁 그리고 국가」(2016.4.29.)를 수정 · 보완한 것이다. 각국에서의 페미니즘 수용 후의 양상 전개를 학제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던 학술회의의 취지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근대 일본 여성운동의 역사를 ‘여성들이 국가를 향해 품었던 기대와 좌절’이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기대를 품는 구체적인 계기가 되었던 ‘모성’ ‘참정권’ ‘전쟁’을 키워드로 하여 통시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 가운데 일본 여성운동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가 없지 않지만,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 여성운동을 통시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 자체, 일차사료의 선택 기준 등은 이 연구의 고유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연구의 성격상 구체적인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필자의 기존 연구성과의 내용을 이 글의 목적에 맞게 선택, 가공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제2장과 제3장은 각각 이은경, 「다이쇼기 여성해방의 사상과 논쟁」(김용덕 엮음, 『일본사의 변환기를 보다』, 지식산업사, 2011), 이은경, 「다이쇼기 일본 여성운동의 조직화와 노선 갈등: 『여성동맹』을 통해 보는 신부인협회(1919~1922)의 역사와 의의」(『동양사학연구』 116, 동양사학회, 2011)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어떤 관계를 이루었는가라는 관점에서 다룬 것이다. 특히 국가의 입장에서 여성에 대한 정책 등을 살핀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입장에서, 즉 이들이 ‘국가를 향해 어떠한 기대를 품었는가’라는 관점에서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와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라는 두 인물을 축으로 삼아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다.

‘국가에 의한 모성의 보호’를 기대했던 히라쓰카는 신부인협회(新婦人協會)를 통해 전개했던 의회 청원운동의 실패를 끝으로 국가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접게 된다. 반면 미국 여성참정권 획득에 자극을 받은 이치카와는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의회 청원운동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 비록 대개는 생활문제의 개선이라는 방식이기는 했지만 — 당국으로부터의 전쟁협력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국가를 향한 ‘기대’는 근대 일본 여성운동을 견인하는 주된 원동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 이치카와가 공직에서 추방되는 것으로 상징되듯- 침략전쟁의 협력의 오명을 쓰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주제어 : 모성, 참정권, 전쟁, 신부인협회, 히라쓰카 라이초, 이치카와 후사에, 전쟁협력

1. 근대 일본 여성 분투기: 히라쓰카 라이초와 이치카와 후사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 점령통치를 수행하던 GHQ는 1946년 1월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정부 및 기업의 요직에서 추방하기로 하고 ‘공직에 관한 취직금지, 퇴직 등에 관한 칙령’(=공직추방령)을 발표, 그에 따라 1948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약 20만 명이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이는 전쟁범죄자와 직업군인뿐 아니라, 국가주의 및 유력 정치단체의 지도자나 금융기관의 임원 그리고 점령지의 행정장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은 것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공직추방 대상자에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 1893~1981), 요시오카 야요이(吉岡彌生: 1871~1959)¹⁾와 같은 일본 여성운동계의

1) 도쿄여의학교(현 도쿄여자의과대학의 전신)의 설립자. 1892년, 여성으로는 드물게 의술개업시험에 합격, 도쿄지성(至誠)의원을 개업했다. 여성을 학생으로 받지 않는 의학계의 풍조에 반발하여 1900년 병원 내에 도쿄여의학교를 설립하고 1931년 도쿄여의학회장에 취임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노력했으나 전시중의

리더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전전 일본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 여성의 참정권 획득 즉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고,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은 일본이 패전한 후인 GHQ 치하에서였던 것을 고려하면 아이러니한 결과였다. 정치 참여가 금지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민법상으로도 ‘무능력자’ 취급을 받는 등, 줄곧 남성과 동등한 ‘국민’ 나아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여성이, 왜 침략전쟁의 책임을 추궁당하며 공직추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결국 근대 일본 여성운동사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잠시 근대 일본 여성운동의 흐름을 개관할 필요가 있다.

메이지유신으로 상징되는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일본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여성을 ‘현모’로 양성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것이 여성교육의 주된 목표가 되었다. 여성에게 주로 ‘훌륭한’ 아이를 ‘낳는’ 역할이 중시되었던 에도(江戸)시대와 달리, 국민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는 근대 일본에서는 ‘교육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기반하여 여아에 대한 초등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1899년 발표된 ‘고등여학교령’의 경우도 이른바 ‘양처현모’의 이념을 공교육체제 안에 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³⁾

하지만 20세기 초부터 이러한 양처현모주의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여성이 놓인 상황에 주목하는 이른바 ‘부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특히 다이쇼시대(1912~1926)에 이르면 여학교 교육과 서양의 여성해방 사상의 유입 등이 맞물려, 일본 여성 스스로가 자신들의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1911년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 1886~1971) 등에 의해 창간된 잡지 『세이토』(靑鞆)는 이러한 여성들의 움직임을 상징하는 것이

국책협력을 이유로 1947년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1951년 추방에서 해제되어 도쿄여자외국어대학 학장으로 복귀했다.

- 2) 최근 이치카와의 전쟁협력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로서 進藤久美子 『市川房枝と「大東亜戦争」：フェミニストは戦争をどう生きるか』(法政大学出版局, 2015)가 있으며, 주로 그의 여성 참정권운동을 연구한 것으로는 菅原和子 『市川房枝と婦人参政権獲得運動』(世織書房, 2002)이 있다.
- 3) 이에 대해서는 小山静子 『良妻賢母という規範』(勁草書房, 1991)의 내용을 참조.

었다. 이후 여학교 교육을 받은 중류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인잡지’가 크게 유행하면서 ‘부인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화되었고, 잡지 지면을 통해 ‘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공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1918~1919년에는 두 여성 평론가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 1878~1942)와 히라쓰카 라이초, 그리고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야마카와 기쿠에(山川菊榮: 1890~1980)를 중심으로 여성의 이상적 삶의 방식이 ‘모성보호’나, ‘경제적 독립’이냐를 둘러싼 이른바 ‘모성보호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이 종결된 직후인 1919년, 히라쓰카는 소학교 교사 출신의 이치카와를 끌어들여 여성단체인 신부인협회를 조직, 여성의 정치참여와 성별·남자 결혼금지에 관한 입법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신부인협회는 매우 제한적인 성과만을 얻은 채 1922년 말 해산을 결정했고, 이후 여성계는 분열되어 각자의 진로를 모색하는 시기를 갖게 된다. 하지만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지진을 계기로 여성의 연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1924년 1월 이치카와 귀국하면서, 여성참정권 획득을 공통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부인참정권획득기성동맹(1925년 부선획득동맹으로 개칭)이 결성되기에 이른다.

1925년 일본에서는 남성 대상의 보통선거 실시가 확정되어 1928년부터 그 시행이 예고된 상태였기에, 여성들도 참정권 획득에 대해 큰 기대를 품었다. 운동의 열기는 매년 고조되었고 정치인과 정부 당국도 비교적 호의적이어서 제한적이거나 여성의 참정권 획득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면서 여성참정권에 관한 논의는 진척을 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졌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본격화되고 일본이 전쟁을 위한 이른바 총력전체제에 돌입하면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위해 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후의 전개, 특히 1941년 12월 진주만공습 이후 일본이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삼삼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1946년 GHQ에 의해 참정권을 비롯한 ‘여성해방’ 정책이 도입됨으로써, 수십년 동안 염원했던 일본 여성의 숙원사업이 외부의 조력에 의해 달성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필요가 있다.⁴⁾

4) 이치카와에 따르면 GHQ 맥아더의 결정에 앞서, 1945년 10월 시데하라(幣原喜重郎) 내각 각의(閣議)에서 이미 일본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고

근대 일본 여성 가운데 히라쓰카 라이초와 이치카와 후사에를 기억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근대 일본 여성운동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각은 일본 여성운동을 양분하는 두 가지 흐름을 대표할 뿐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갈등하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갔기 때문이다. 즉 히라쓰카가 여성이 남성과 다른 여성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여성성 혹은 모성을 중시하는 여성주의·차이파 페미니즘을 대표한다면, 이치카와는 여성이 남성과 다르지 않다는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여권주의·평등파 페미니즘을 대표한다. 먼저 두각을 드러낸 것은 1886년생인 히라쓰카였다. 그가 신부인협회 창립을 앞두고 손을 내민 것을 계기로, 본래는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1893년생 이치카와가 여성운동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신부인협회 활동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노선을 달리하게 되면서, 양자는 근대 일본 여성운동에서 서로 다른 운동의 양대 흐름을 형성해 갔던 것이다.

본고는 이상의 두 인물을 중심으로 근대 일본 여성운동의 궤적을 고찰하려 한다. 일본 여성운동의 특징을 이루는 다양한 주제 가운데 주로 ‘모성’ ‘참정권’ ‘전쟁’이라는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일본이라는 ‘국가’ 혹은 근대국가와 어떠한 관계를 이루었는가, 혹은 이루기를 기대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이것은 제한된 분량 안에 근대 일본의 여성사 전반이라는 방대한 내용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담아내기 위한 교육지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구도가 근대 일본 여성운동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자 또한 한계라는, 현재 필자가 가진 문제의식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다(市川房枝, 「私の婦人運動—戦前から戦後へ」, 『歴史評論』編集部編, 『近代日本女性史への証言』, ドメス出版, 1979, 75~76쪽). 일본에서의 여성참정권 실현에 있어서, 이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것이다.

II. 히라쓰카 라이초의 모성보호: 국가에 대한 다대한 기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1918~1919년에 걸쳐 당시 가장 걸출한 여류작가이자 평론가였던 요사노 아키코와 히라쓰카 라이초를 중심으로 이른바 ‘모성보호논쟁’이 펼쳐졌다.⁵⁾ 실제로는 이미 1916년부터 양자 사이에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모성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논전이 펼쳐졌던 바가 있었고, 1918년부터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히라쓰카보다 더 보수적으로 가정과 모성의 중요성을 강변하던 야마다 와카(山田わか: 1879~1957)와 사회주의에 기반한 야마카와 기쿠에 등이 참전하면서 논쟁은 더 활기를 띠었다.

‘여권’ 신장에 대한 주장이 우세하던 서구에서 유독 ‘모성’의 보호를 주장 하였던 스웨덴의 평론가 엘렌 케이(Ellen Key: 1849~1926)의 저작이 히라쓰카 등의 번역을 통해 일본에 보급되었고, 요사노가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모성의 보호보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히라쓰카의 반박과 요사노의 재반박이 수차례 반복되는 형태로 논쟁은 전개되었다. 그 자신 가난한 과자점에서 태어나 가업을 운영했으며, 11번의 출산을 경험하면서도 평생 24권의 가집과 15권의 다양한 저서를 내놓는 등 평생 정력적으로 활동했던 요사노와,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나 일본여자대학을 다녔고 종교와 문학활동에 심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만난 남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한 사건으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가 또 다른 남자와 동거(=공동생활)하며 두 번의 출산을 경험한 히라쓰카. 이 둘이 『태양』(太陽)이나 『부인공론』(婦人公論)과 같은 당대의 저명한 저널 지면을 옮겨다니며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의 필요성과 여성 자신의 ‘경제적 독립’의 선택을 놓고 논쟁을 벌인 것은, 당사자뿐 아니라 남성 중심의 당대 지식인과 여론의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했다.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천부(天賦)의 사명’이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주장이나, ‘여자 생활의 중심요소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는 케이 등의 주장에 대해, 요사노는 “여자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어머니가 되는 것만을 중심요소로 삼아야 하는가”⁶⁾라며 개탄했다. 그는 남녀 구분 없이 그 본무(本務)를 ‘인

5) 이은경, 앞의 글, 2011을 참조할 것.

류 행복의 증가'라는 한 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모든 일을 남녀가 평등하게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만일 여성이 '모성'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남성도 '부성'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부성의 사랑도 모성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 자유롭게 신장시켜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⁷⁾ 나아가 국가가 여성을 특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나는 구미의 부인운동에서 주장되는, 임신·분만 등의 시기에 있는 **부인이 국가를 향해 경제상의 특수한 보호를 요구하려고 하는 주장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생식적 봉사에 의해 부인이 남자에게 기식하는 것을 노예도덕이라고 간주하는 우리들은, 같은 이유로 **국가에 기식하는 것도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주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후 생활의 원칙으로서, 남자도 여자도 자신들 부부의 물질적 생활은 물론, 미래에 낳을 자기 아이의 포육(哺育)과 교육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보장이 상호 노동에 따라 확보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 정도의 재력이 이미 남녀 양쪽 모두에게 축적되기를 기다린 뒤에 결혼하고 또 분만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남자에게 그 경제적인 보장이 있더라도 여자에게 아직 그 보장이 없다면 결혼 및 분만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⁸⁾

하지만 히라쓰카는 어차피 "어머니의 경제적 독립이라는 것은 웬만큼 특수한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 외에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부부 모두가 경제적으로 자식을 부양할 능력을 확보한 후에야 결혼이 가능하다는 요사노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요사노의 주장을 따른다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인을 생애 또는 장기간 독신자로서 노동시장에 두려고 하는" 셈이 되고, 이것은 "부인 자신의 불행"일 뿐 아니라 "국가로

6) 与謝野晶子, 「母性偏重を排す」(1916. 2), 『資料 母性保護論争』ドメス出版, 1988(1984), 29~30쪽.

7) 与謝野晶子, 같은 글, 35쪽.

8) 与謝野晶子, 「女子の徹底した独立」(1918.3), 『資料 母性保護論争』, 85쪽.

서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커다란 손실”이라고 생각했다. 나아가 사생아의 증가를 비롯한 여타의 죄악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하였다.⁹⁾

히라쓰카의 주장은 대부분 ‘부정적 현실’에 대한 차선책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생아가 증가하는 현실, 상대 남자로부터 부양을 받기는커녕 윤리적 죄인으로 내몰리는 미혼모, 이러한 현실을 묵인하는 결혼제도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모자의 비참한 생활,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달성할 만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운 열악한 사회적 지위. 히라쓰카는 이 모든 ‘부정적’ 상황을 타개하려는 대안으로서 ‘국가’를 끌어들었다. 국가에게 이 책임을 지우고자 내놓은 논리는 바로 이러한 모자(혹은 모녀)를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었다.

여기에서 엿보이는 그의 사상이란, 첫째, [케이의 영향을 받아] 여성이 종족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당위성, 둘째, 당분간 자립할 전망이 없는 여성을 당장 구할 수 있는 것은 ‘국가’밖에 없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히라쓰카와 ‘개인’을 중시한 요사노 사이의 인식의 차는 확연했다. 본격적인 ‘논쟁’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히라쓰카의 ‘국가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타당한가’ 하는 점이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논쟁’ 이후 히라쓰카의 행적, 즉 우생학적인 언설로 제국 일본의 정책에 협조했던 것을 떠올리며 그의 국가관을 문제시했지만, 사실 그의 현실인식과 국가관에 문제가 있음을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논쟁의 당사자였던 요사노였다. 그는 히라쓰카의 문제제기가 ‘현재’와 ‘미래’를 혼동하는 데서 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히라쓰카 씨는 ‘현재 있는 것’과 ‘장래에 있어야 할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부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미래의 부인도 언제나까지 마찬가지로의 생활 과정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이상을 향해 미래의 생활을 조준하여 전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분만, 육아기에 국가의 보호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경제적으로 무력한 불행한 부인이 되지 않으려는 자각을 가지고, **여자 스스로 훈련하**

9) において, 「母性保護の主張は依頼主義か」(1918.5), 『資料 母性保護論争』, 90~91쪽.

고 노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특수한 보호**는 결코 일반 부인에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불행한 부인**을 위해서만 어쩔 수 없이 요구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¹⁰⁾

요사노에 따르면, 히라쓰카 역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있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현재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 나머지 ‘국가’라는 차선책을 끌어들이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에 견주어 요사노는 부정적인 현재의 상황보다는 ‘앞으로 있어야 할 것’에 주된 관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셈이다. 나아가 요사노는 히라쓰카가 이야기하는 ‘국가’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 또는 국가가 모성을 보호하는 방법이 막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히라쓰카 씨는 ‘국가’라는 것에 **다대(多大)한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지만, 이 점도 나와 다소 일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히라쓰카가 말하는 ‘국가’는 현상(現狀) 그대로의 국가가 아니라, 물론 이상적으로 **개조된 국가**의 의미겠지요. 그렇다면, 개인의 개조가 제일의 급무(急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조된 개인의 힘을 모으지 않으면 개조된 국가는 실현되지 않을** 터입니다.¹¹⁾

요사노는 히라쓰카의 ‘국가’에 관한 인식이 너무도 추상적인 나머지 자신이 추구하는 국가의 개조 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국가를 개조하려면 개인의 개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히라쓰카는 주로 모성의 사회적 기여 또는 국가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모성보호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여성의 현상(現狀)을 비판하는 데 비해, 국가의 역할에 긍정적인

10) 与謝野晶子, 「平塚さんと私の論争」(1918.6), 『資料 母性保護論争』, 97쪽. 강조는 인용자.

11) 与謝野晶子, 같은 글, 10쪽. 괄호와 강조는 인용자.

기대를 걸어도 좋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아이란 설령 자신이 낳은 자신의 아이라도 자신의 **사유물이 아니라, 그 사회의, 그 국가의 것**입니다. 아이의 수나 질은 국가사회의 진보발전, 그 장래의 운명과 지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또 키운다는 어머니의 일은 이미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부인에게만 부과된 사회적 의무로, 아이를 낳고 또 키울 뿐 아니라, **좋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운다는** 이중의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어머니가 이 의무를 다한다는 한 가지만 생각해도, 충분한 보수를 줌으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모성에 가장 확실한 경제적 안정을 주는 것은(…) 자연 아동의 사망률을 낮추고(…) 아동의 정신과 육체도 일반적으로 건전한 자로 키우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과도 일치합니다(…) 모성을 보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직접 보호를 받는 어머니나, 어머니를 통해 보호되는 아이의 행복뿐 아니라 **국가의 이해와 크게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선구제의 사업이 아닙니다.¹²⁾

히라쓰카는 가정생활과 직업생활 사이에 비단 출산 전후의 짧은 기간에만 국한되지 않는 모순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 갈등은 국가의 ‘모성보호’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한다. 그는 모성보호야말로 ‘연애결혼의 이상을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이라고 해서 가족과 사회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모성보호를 통해 가족과 사회를 모두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그가 가진 당시의 일본 노동제도와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노동을 둘러싼 상황이 앞으로도 여성에게 적합해질 것 같지 않으며,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노동력 과잉으로 인한 임금의 하락을 초래, 생활난을 가중시키고 가정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¹³⁾

12) らいてう, 「母性保護問題に就いて再び与謝野晶子氏に寄す」(1918.6), 『資料 母性保護論争』, 109쪽. 생략과 강조는 인용자.

이처럼 가사노동과 직업생활의 병립 불가, 거기에 노동력 과잉에 따른 임금 하락, 출산과 육아가 국가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사회적 행위라는 그의 신념이 변하지 않는 한, 히라쓰카가 모성보호의 주장을 굽힐 가능성은 없었다. 신기한 것은 그가 모든 현상의 개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 그 비판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기대 대상으로 ‘국가’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의 국가에 대한 긍정과 낙관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는 ‘논쟁’이 끝날 때까지도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 있었다. 모성보호를 둘러싼 히라쓰카와 요사노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릴 뿐이었다.

Ⅲ. 신부인협회의 의회청원운동: 국가와의 대면과 좌절

1. 신부인협회의 결성과 목표

모성보호논쟁이 끝난 직후인 1919년 중반, 히라쓰카는 새로운 움직임에 나섰다. 이 시기는 세계대전 종결과 함께 서양 각국에서 여성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실현되기 시작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직의 설립에 나섰다. 같은 무렵 빈민운동가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 1888~1960) 목사의 안내에 의한 공장 시찰을 계기로 자신과 계급을 달리하는 여공들의 문제에도 눈뜨게 된 히라쓰카는, 진로를 모색하고 있던 20대 중반의 교사 출신 이치카와 후사에를 동반자로 선택, 신부인협회라는 여성 조직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¹⁴⁾

이러한 히라쓰카의 행적은 그가 ‘논쟁’을 거치면서 당시의 주장과 행동에

13) らいてう, 같은 글, 114~115쪽.

14) 히라쓰카는 가가와 목사를 만나면서 여공들의 문제와 같은 노동문제에도 눈을 뜨게 되었고 이것이 본래 그의 성향이나 관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진 이치카와와 협력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양자는 서로의 성향과 관심이 다름을 확인하게 되고 갈등 끝에 각기 신부인협회를 탈퇴하는 방식으로 헤어지게 되었다. 신부인협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은경, 앞의 글, 2011.9를 참고할 것.

서 진일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이전의 ‘여성주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여권주의’와의 조화를 꾀했으며, 둘째, 개인과 사회의 개조 가능성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던 과거와 달리 스스로 여성과 사회를 개조하려 시도했고, 셋째, 국가에 대해 막연하게 ‘다대한 기대’를 품고 있던 수준을 넘어 여성으로서 국가를 향해 직접 ‘말걸기’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선언>

부인도 또한 부인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의무와 권리의 수행을 위해 단결해야 할 때가 왔다. 지금이야말로 부인은 부인 자신의 교양, 자아의 충실을 기할 뿐만 아니라 상호의 견고한 단결력에 의해 **사회적 지위의 향상·개선을 도모**하고, 부인으로서의 권리 획득을 위해 남자와 협력해서 전후 **사회개조의 실제운동에 참가**해야 할 때다 …〔빼어난 역량을 지닌 부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부인의 힘이 하나로서 사회적으로 혹은 사회적 세력이 되어 활동하지 않는 것은 왜인가. 부인 상호간의 어떤 연락도 없고 각자 고립 상태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그 힘을 부인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하려는 노력도 없고, 또 그를 위한 기관도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 이에 우리가 미력을 돌아보지 않고, 동지를 규합하여 여기 부인의 단체활동을 위한 한 기관으로서 신부인협회를 조직하여, 부인 상호의 단결을 도모하고 견인지구(堅引持久)의 정신을 가지고 부인 옹호를 위해, 그 진보향상을 위해, 혹은 이익의 증진과 권리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을 기약하는 바이다.¹⁵⁾

<강령>

- 1) 부인의 능력을 자유로이 발달시키기 위해 **남녀의 기회균등**을 주장할 것,
- 2) **남녀 가치동등관** 위에 서서 그 **차별을 인정**하고 협력을 주장할 것,
- 3) **가정**의 사회적 의의를 천명할 것,
- 4) **부인, 어머니, 아이**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이익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에 반하는 일체를 배제할 것.¹⁶⁾

15) 「新婦人協會の宣言・綱領・規約」, 『婦人問題資料集成』第二卷, ドメス出版, 1977, 160~162쪽. 강조, 줄임, 괄호 안은 모두 인용자.

16) 같은 글, 160~162쪽. 당시 문헌들에서 ‘차별(差別)’이라는 용어는 지금의 ‘차별’(discrimination)보다는 ‘차이’(difference)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워

이상 간단하게나마 ‘선언’과 ‘강령’의 내용을 통해, ‘협회’가 앞의 두 가지 특징, 즉 모성주의와 모권주의의 동시 추구, 개인과 사회 개조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한 국가를 향한 ‘말걸기’라는 것은 의회를 통한 청원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협회’는 결성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로서 ‘치안경찰법 제5조의 개정’(이하, 치경법개정)과 ‘화류병남자 결혼제한’(이하, 화류병제한)을 위한 의회청원운동을 내걸고 이에 돌입했다. 개정을 목표로 했던 치안경찰법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제5조, 이하에 열거하는 자는 정사상의 결사에 가입할 수 없다
 일. 현역 및 소집 중의 예비·후비의 육해군 군인
 이. 경찰관
 삼. 신관·신직·승려 기타 제종(諸種)교사
 사. 관립·공립·사립학교 교원·학생·생도

오. 여자(五. 女子)

육. 미성년자
 칠. 공권 박탈 및 정지 중인 자
여자 및(女子及) 미성년자는 사람을 모으는 정담집회의 회동 혹은 발기인이 되는 것을 금함.¹⁷⁾

결사 가입과 관련한 ‘오. 여자’(五. 女子)라는 세 글자, 그리고 정담집회 참여와 관련된 ‘여자 및’(女子及)이라는 세 글자, 이렇게 총 ‘여섯 글자’를 지음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치경법개정의 구체적인 목적이었다.

치경법개정은 취지와 내용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지만, 화류병제한의 경우에는 다소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협회’는 민법의 혼인 관련 규정 어딘가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보인다.
 17) 『治安警察法〈抜粹〉』, 『婦人問題資料集成』第二卷, 139쪽.

일. 현재 화류병을 앓고 있는 남자는 결혼할 수 없다.

일. 결혼하려는 남자는 먼저 상대 여자에게 의사의 건강진단서를 제시해서 화류병 환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일. 이 증명서는 혼인신고서에 첨부해서 호적계에 제출해야 한다.

일. 결혼 후 남편이 화류병을 은폐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일. 결혼 후 남편이 화류병을 앓는 경우 또는 남편으로부터 병독(病毒)이 감염된 경우 아내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일. 남편으로부터 병독이 감염된 경우 아내는 이혼 후에도 남자에게 완치 될 때까지 생활비와 치료비와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¹⁸⁾

화류병제한에 대한 강한 비난에도 불구하고¹⁹⁾ 참정권운동의 일환인 치경 법개정과 더불어 화류병제한을 양대 사업으로 천명했던 것은, 여성주의 운동과 여권주의 운동을 병행한다는 ‘협회’ 설립의 취지를 상징하는 지점이자 그러한 방향성을 의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여겨진다.²⁰⁾ 1920년 1월 ‘협회’는 두 청원서에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 중의원과 귀족원 양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하라 다카시(原敬) 수상은 당시 열기가 고조되던 보선(보통선거)운동을 위협사상이라 간주하여 제42기 의회를 해산시켜버렸고, 덕택에 ‘협회’ 최초의 의회 청원은 별다른 논의도 해보지 못한 채 무용지몰이 되었다.

2. 의회청원의 실패와 두 주역의 이탈

1920년 말에 열리는 제44기 의회 청원을 앞두고는, 규제 대상으로 ‘남자’를 적시했던 본래의 ‘화류병남자 결혼제한에 관한 청원서’를 ‘화류병자에 대한

18) 「花柳病男子の結婚制限に関する請願書」, 『婦人問題資料集成』 第二卷, 155쪽.

19) 당시 화류병제한이 공감보다는 주로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첫째, 결혼 금지 사유를 화류병으로만 한정한 것, 둘째, 대상자를 남자로 한정한 것, 셋째, 평소 히라쓰카의 지론이었던 연애결혼 주장과 모순이라는 것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与謝野晶子, 「新婦人協會の請願運動」(1920.2), 『与謝野晶子評論集』, 岩波文庫 38-2, 1999 (1985), 313~322쪽).

20) 市川房枝, 「婦人の社会運動」(1920.1.20.), 市川房枝 『市川房枝集』1, 日本図書センター, 1994, 149쪽.

결혼제한 및 이혼청구에 관한 청원서'로 수정했다. 제재 대상을 '화류병자'가 아닌 '화류병 남자'로 한정된 것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이유로, 대중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의회에서는 냉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남성들의 방종한 성생활로 인해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여자의 입장에서 '도덕적 혹은 교육적' 효과를 노린 의도적인 선택이었기에,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히라쓰카는 이를 고집했었다. 그러나 야심차게 청원을 준비했던 제42기 의회가 돌연 해산하고 제43기 의회에서 여성들의 이러한 청원이 변변한 논의조차 없이 기각되면서, '협회'는, 특히 히라쓰카는 남성만으로 이루어진 의회 혹은 정부가 여성에 대해 얼마나 이해가 없는지를 실감했다. 의회라는 것이 결코 논리와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파(政派)와 인맥 혹은 기세에 의해 움직이는 복마전임을 깨닫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타협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어렵게 제출한 화류병 관련 청원은 중의원의 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반감을 완화해보려던 '협회'의 노력은 이번에도 보답 받지 못했다. 의회의 첫 관문, 즉 중의원 본의회 회부에 앞서 심의를 맡은 위원회의 위원들은 '화류병남자'를 '화류병자'로 수정한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여전히 남녀가 대등하지 않다, 여전히 남자에게만 제한을 두려는 것이다, 남존여비가 일본의 국정(国情)이기에 남자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등의 구실을 붙여 반대했고, 결국 청원은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되었다. 귀족원은커녕 중의원 본회의에조차 상정되지 못한 채 위원회에서 기각되었던 것이다.²¹⁾

치경법개정의 경우 이보다는 형편이 나았다고 해도,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찬반이 갈렸던 화류병제한에 비하면, 여성의 정치 참여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사회 분위기와 서양에서의 사례에 힘입어 정부와 의회 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치경법개정의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여성의 '결사'의 자유는 여전히 보류하나 '정답집회 회동'만은 허락하는 내용을 담은, 여러 개정안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정우회(政友會)의

21) 「議員の花柳病者結婚制限に就いての討論」, 『女性同盟』 6, 1921.3. 본 기사는 1921년 2월 7일자 제44기 중의원 <請願委員第二分科會議録> 가운데 본 청원 관련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다.

개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²²⁾ 이치카와를 중심으로 위 원장과 위원들을 방문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 끝에 귀족원의 위원회 까지도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보수적인 귀족원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는 못했다.

첫째, 그것은 생리적으로 말해도 심리적으로 말해도 자연의 이법에 반합니 다. 다음으로 (...) 정치상의 운동을 남자와 함께 이것저것 활동한다는 것은 여자의 본분이 아닙니다. 여자의 본분은 가정에 있으며 교육 내지 사회적 사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사회 표면에 나서 정치상 의 운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것은 고래로 부터 역사에서 그 실례가 적지 않습니다. (...) 근래 신여성인지 무엇인지 하는 묘한 여성단체가 여러 가지 정치상의 활약을 시도하려 하는 것을 저 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귀족원이 이를 허락한다는 것 은 우리 국체(国体)에 관련된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단연코 이를 반대합니 다.²³⁾

이러한 반대 발언에 밀려, 기립에 의한 투표에서 간단히 불채택이 선언되고 말았다. 당연히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의원들 가운데 소수만이 기립했을 뿐이었다. ‘협회’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제44기 의회청원도 이렇게 실패로 끝 났다. 사실 이때야말로 히라쓰카와 이치카와가 협력하여 치경법개정과 화류 병제한 청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던, ‘협회’ 활동의 최고조기였다. 청원 실패 직후인 1921년 여름 이치카와는 도미(渡米) 를 이유로 ‘협회’를 이탈하였고, 그에 이어 히라쓰카 역시 요양을 이유로 ‘협 회’를 떠났다. 이후 협회는 또 한명의 발기인이었던 오쿠 무메오(奥むめお: 1895~1997)를 중심으로 1922년 말 해산까지 활동을 계속하지만, 설립의 양 대 축이었던 히라쓰카와 이치카와가 떠난 ‘협회’는 더 이상 창립 당시의 ‘협 회’와 같은 조직이라고 하기 어려웠다.

22) 市川房枝, 「治警第五条第二項改正案衆議院通過」(1921.3), 『市川房枝集』 1, 170~176쪽.

23) <貴族院議事録録第二十六号 大正十年三月二十六日>, 904~905쪽. 생략은 인 용자.

3. 히라쓰카의 국가에 대한 기대와 좌절

제44기 의회에서의 부결로 인한 ‘협회’의 충격과 좌절은 컸다. 비난의 눈총은 의회로 모아졌고 여성의 운동과 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도 깊어졌다. 앞으로도 의회 중심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작전의 실패와 운동 부족, 좋은 일꾼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자성도 없지 않았으나,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회 회기의 마지막 날에야 그것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부결되는 현실, 여성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 의회의 실체를 ‘제대로’ 목격한 충격으로 인한 동요가 컸다.²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1918년 ‘논쟁’에서 주로 ‘모성보호’를 주장했던 히라쓰카가 ‘협회’를 조직하면서 여성 참정권 관련 청원에 나섰던 것이, 평소의 모성주의 신념을 포기했기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본래 ‘협회’ 설립의 정신, 특히 여성참정권 획득과 관련된 주장은 히라쓰카에게 운동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가까웠다. 그가 주장하는 연애 존중, 모성 존중을 위해서는 ‘사회’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했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여성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전략적 사고가 작용했던 것이다. 이것이 그가 ‘협회’를 만든 이유였다.

‘논쟁’ 당시 국가가 모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히라쓰카는, 요사노 등으로부터 국가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긍정적이며 국가에 기대하는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식의 비판을 받았었다.²⁵⁾ 하지만 여성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대신 국가에게 여성과 아이의 보호를 의뢰해도 좋을 만큼 국가가 신뢰할 만한 존재인지는 한번도 입증된 적이 없었다. ‘협회’의 의회 청원활동은 ‘국가’에 대해 기대를 품은 히라쓰카가 처음으로 그 실체를 대면하는 기회였던 셈이다. 특히 성병을 가진 남자의 결혼을 제한하는 ‘화류병제한’은 그가 ‘여성으로서’ 국가에 무엇인가를 요청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그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히라쓰

24) 市川房枝, 「藤村男爵は本気ではあるまい」(1921.5), 『市川房枝集』 1, 186쪽.

25) 与謝野晶子, 앞의 글, 1918.6, 102쪽.

카가 자신의 사상과 실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의회가 상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는 ‘화류병제한’조차 수용해줄 수 없다면, 그러한 국가에게 ‘모성보호’를 기대하기는 더욱더 어렵기 때문이다.

훗날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귀족원에서의 부결은 정파적인 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여성문제에 대한 견해의 차이 또는 여성의 정치집회 방청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한 결과는 아니었다. 히라쓰카가 조직을 결성하여 1년 이상 전력투구했던 ‘여성’의 보호와 ‘여권’의 신장을 위한 노력들은, 남성만이 존재하는 의회에서 전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제 히라쓰카와 ‘협회’는 운동의 방식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여성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작한 운동은, 히라쓰카가 그토록 기대를 품었던 ‘국가’의 실체와 마주치는 순간 ‘남성’들만의 목소리로 변질되었다. 이후로도 거듭되는 좌절 속에 ‘협회’의 의회운동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창립 당시부터 ‘협회’에게 ‘의회’는 운동의 중심이자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협회’는 의회 회기에 맞추어 청원을 준비하느라 실제 창립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발회식을 할 정도로, 창립 당시부터 모든 역량을 의회에 집중해야 했다.²⁶⁾ ‘제국 신민은 의회에 청원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당시의 일본 여성이 정치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에, ‘협회’는 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의회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결코 치경법개정 때문만이 아니었다. 잠시 양보하여 이를 수정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성이 정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리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획득이었다.²⁷⁾

하지만 의회에서는 모든 문제가 정파 간에서 결정되는 현실이었기에, 특정 당파의 지지로 인해 또다른 정파의 반감을 사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했다. 의회 청원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이란 정파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고 그들을 설득하여 여성운동에 호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²⁸⁾

26) 市川房枝, 「創立より『女性同盟』発刊まで」(上) (1920.10), 『市川房枝集』 1, 56쪽.

27) 市川房枝, 「治安警察法第五条修正の運動(上)」(1920.10), 『市川房枝集』 1, 84~85쪽.

의회운동에 정력이 매우 많이 소모되었던 만큼, 특히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제 44기 의회 활동은 정치인에 대한 탄핵이나 정당 타파 정도가 아니라 의회제도의 존재 자체에 회의를 느낄 정도로 ‘협회’에게 커다란 후유증을 남겼다.²⁹⁾

히라쓰카는 ‘협회’ 설립 1년 반 만에 활동의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를 요청했으며 이는 의회운동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를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히라쓰카와 이치카와가 떠난 후인 1922년 3월, ‘협회’는 제45기 의회에 치경법개정 청원을 통해 ‘여자 및’이라는 세 글짜를 지우는데 성공, 여성의 정치행사 참가가 가능해지는 최소한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것은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하기 어려웠다. 히라쓰카는 다시 한번 ‘협회’의 해산을 요청했고 결국 같은해 12월 해산이 의결되었다. 이후 히라쓰카는 국가나 의회를 향해 ‘여성으로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보다 조합운동에 몰두하거나 아나키즘에 경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침략전쟁기에는 모성과 관련하여 총력 전체체에 동조하는 내용의 문장을 발표하는 등 어용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요양을 이유로 정치적 운동이나 조직적 활동에 깊이 개입하는 일 없이 비교적 조용하게 지냈다. 그가 평화운동가로서 다시 여성운동계에 복귀한 것은 일본이 패전한 이후의 일이었다.

IV. 이치카와 후사에의 부선희득동맹: “부선은 열쇠다”

‘협회’가 해산한 지 약 2년 후인 1924년 12월, 부인참정권획득기성동맹회라는 단체가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1923년 9월 1일 발생했던 간토대지진을 계기로 여성계가 단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더하여, 1924년 1월 약 2년 동안의 미국 체류 중에 여성참정권의 실현을 실제 목격한 이치카와가

28) 市川房枝, 「治安警察法第五條修正の運動(中)」(1920.11), 『市川房枝集』 1, 101쪽. 제43기 의회에서 정우회가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개정안 제출을 주저하자, 이치카와는 정권 퇴진을 입에 담을 정도로 커다란 배신감을 표현했다. 의회운동은 정당의 번덕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불안정한 운동이었던 것이다(市川房枝, 「治安警察法第五條修正の運動(下)」(1920.12), 『市川房枝集』 1, 106쪽).

29) 奥むめお, 「綱紀振肅」, 『女性同盟』 10, 1921.7, 17쪽.

귀국한 것이 단체 설립의 커다란 동력이 되었다. 특히 이치카와는 미국의 여성운동가 앨리스 폴(Alice Paul: 1885~1977)로부터 ‘노동운동은 남자가 하는 경우도 많지만, 부인운동은 여자가 아니면 안 되니 부인운동에 집중하라’³⁰⁾는 조언을 듣고, 이를 의미있게 마음에 담고 있었다

1925년 4월에는 단체의 이름을 ‘부선희득동맹’(婦選獲得同盟, 이하 ‘동맹’)으로 개칭했는데, 이는 1925년 확정된 남성의 ‘후센’(普選)과 여성참정권을 의미하는 ‘후센’(婦選)의 발음이 같은 것을 응용하여, 진정한 ‘후센’이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맹’의 사무소를 의회에 가까운 도쿄 고지마치(麹町)에 마련함으로써 ‘동맹’ 활동의 중심이 ‘의회’ 활동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³¹⁾

이치카와에 따르면 “우리 부선희득동맹은 부선 획득만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는 여권 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부인 대중의 당면문제를 망각하기 때문이 아니며 또한 이를 도외시한 결과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단체로서의 정책에 불과하다.”³²⁾ ‘동맹’은 여러 단체가 단결하여 성립된 것이니만큼 공동의 목표를 극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여타의 문제는 개별 단체가 수행하면 되는 것이었다. “의회운동에 대해서는, 그것을 위해 정력의 대부분을 소모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바이지만 부선의 획득이 법률의 개정에 있는 이상, 부선운동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한 운동이라는 것도 또한 부정할 수 없다.”³³⁾ ‘협회’ 운동의 좌절 후 히라쓰카는 의회운동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로부터 멀어졌지만, 미국에서 ‘부선’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돌아온 이치카와로서는 법률 개정을 위한 의회운동의 필요성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근대 일본 여성사에 대한 연구를 축적해온 대표적 연구자 가노 마사나오는 ‘동맹’ 운동방식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³⁴⁾ 첫째, 대(對)의회

30) 市川房枝·児玉勝子·伊藤康子, 앞의 글, 1979.3, 4쪽.

31) 鹿野政直, 「婦選獲得同盟の成立と展開: 『満州事変』勃発まで」, 『日本歴史』 319, 1974.12, 71쪽.

32) 市川房枝, 「婦選獲得同盟の対政党政策」, 『婦選』 1-3, 1927.3.

33) 市川房枝, 같은 글.

34) 鹿野政直, 앞의 글, 1974.12.

운동이 운동의 중심이 된다는 점이다. ‘동맹’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중립의 입장”을 취한다는 이치카와의 원칙에 준하여 의원 개개인을 공략하는 방법을 택했다. 1924년 12월 제50기 의회의 경우, 이른바 ‘부선 3권’(婦選三權)³⁵⁾이 ‘동맹’의 주장에 동의하는 남성 의원들에 의해 각각 제출되어, 모두 중의원을 통과하고 귀족원에서 ‘심의미료’(審議未了)로 끝났다. 이것은 이후로도 매 회기마다 법률안 혹은 건의안의 형태로 제출되었다. 특히 1927년에 이르러 ‘동맹’은 의원 개개인에 대한 공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정당과 정우회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입했다.³⁶⁾

둘째, 대의회운동의 일환으로 ‘부선’을 이해하는 의원을 배출하는데 적극 노력한 것이다. 특히 1928년 2월 제1회 남자보통선거 실시에 즈음해서는 ‘동맹’ 차원에서 ‘부선’ 지지를 내건 후보자를 응원하고 선거활동을 감시하기로 결의, 실제 이치카와는 각 정당 사무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셋째, 여성 공동전선에 대한 열의가 지속된 것이다. 당시 다양한 세력이 난립하여 의견이 충돌하던 여성계의 상황에서, ‘동맹’은 다카무레 이쓰에(高群逸枝)의 아나키즘적인 의견부터 야마카와 기쿠에의 사회주의적 견해에까지 귀를 기울이는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여성 연대의 장으로 기능했다.

첫 남자 보선이 시행된 1928년은 여성참정권 운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기였다. ‘동맹’은 “올해야말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동맹의 [정계]진출 원년으로”³⁷⁾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졌으며, 이러한 각오를 보여주듯 같은해 3월에는 ‘동맹’을 비롯 계층적으로 다양한 여성단체가 ‘부선 3권’ 달성을 목적으로 연합하여 부선희득공동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동맹’의 총회에서는 정당이 부선 3권을 정강에 넣을 것, 여학교에 공민과목을 포함시킬 것 등을 요구했으며, ‘부선’ 획득이 필요한 이유로서 첫째, “정치를 정당의 진흥당 싸움에서 구하기” 위해, 둘째, “정치와 부업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기 위해, 셋째,

35) 근대 일본에서 ‘여성참정권’이라고 할 때에는 지방정치 참가의 권리 및 선거권·피선거권인 공민권, 정당 결사와 가입의 권리인 결사권, 국정참가의 권리 및 중의선 선거·피선거권인 참정권의 세 가지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을 ‘부선 3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6) 鹿野政直, 앞의 글, 1974.12, 73~74쪽.

37) 「主張-昭和三年を送る」, 『婦選』 2-10, 1928.12.

“부인 및 아이에게 불리한 법률제도를 개폐(改廢)”³⁸⁾하기 위해라는 세 가지를 내세웠다.

‘동맹’의 활동은 이전의 대의회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계몽운동 및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동맹’의 활동은 첫째, 계층과 지역 등의 한계를 넘어 대중성의 확대를 위해 힘을 기울였으며, 둘째, 정치적 권리 획득이라는 본래의 목적뿐 아니라 도시문제·사회문제·평화문제 등으로 시야를 확대하여, 도쿄시의회 선거에 개입하거나 가스비 인하운동 등을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선 획득을 위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고 압력을 제고하면서,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단은 ‘부선 3권’ 가운데 ‘공민권’의 실현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1930년에는 제1회 전일본부선대회가 개최되어 12월의 제59기 의회를 앞두고 여성참정권 실현을 위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를 반영하듯 하마구치(浜口雄幸)내각은 부현(府県)을 제외한 시정촌(市町村) 수준에서의 여성선거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제한공민권법안’을 선제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이치카와를 비롯한 ‘동맹’ 측은 “부인을 저능아 취급하는 것으로(…) 야시장 꽃처럼 헐값으로 깎으려는 것”³⁹⁾이라며 거부했고, 의회의 귀족원 본회에서 부결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이처럼 부인을 굴욕적 지위로 밀어넣는 제한안의 부결을 마음으로부터 환영”⁴⁰⁾한다고도 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1931년 말에 있을 제60기 의회야말로 결전의 장소가 될 것임이 확실했으며, ‘동맹’은 의회 폐회 기간 동안 역량을 축적하며 이에 대비하였다.

사실상 의회운동에만 집중하다시피 했던 ‘협회’ 시절과 비교하면 ‘동맹’의 부선운동은 분명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교로부터 사회주의, 아나키즘에 이르는 다양한 성향과 계층을 망라하는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부선’으로 한정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운동에만 매달리기보다 대중운동과 시정문제 해결 등의 방식으로 운동방식을 다양화하는 전술을 택했음은 앞서 서술했던 바와 같다. 즉 공동의 일차적인

38) 「婦選獲得同盟總會の記」, 『婦選』 2-4, 1928.6.

39) 市川房枝, 「制限婦人公民權案を排す」, 『婦選』 4-7, 1930.8.

40) 坂本真琴, 「公民權案の貴族院に於ける審議—全国の同志にこの二の情景の報道を献ぐ」, 『婦選』 5-4, 1931.4.

목표는 ‘부선’으로 단순화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은 다양화하여, 대중과 접촉하여 지지여론을 고조시키고 시정문제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가져올 긍정적인 기대를 입증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도 보수적인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실감했던, ‘협회’ 활동의 시행착오에서 나온 결정이었을 것이다. 특히 정당과 정부 당국보다도 한층 보수적인 귀족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중과 언론의 압력이 필수적이라 여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듯했다. 다가올 1931년의 제60기 의회에서 ‘부선’,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공민권 실현을 의심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동맹’의 오랜 숙원은 조만간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1931년 9월 발발한 만주사변은 여성참정권 실현을 향해 무르익었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히라쓰카와 달리 그와 함께 ‘협회’ 활동을 했던 이치카와는 여전히 의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동맹’활동을 계속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치카와는 여권신장을 위한 그 모든 활동의 시작점이 ‘여성참정권 실현’에 있으며, 이는 의회를 통한 법률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여성참정권 획득이 최우선이라는 전제 앞에 의회를 통한 입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성참정권은 열쇠’에 다름 아니었다. 여성이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정치의 영역에 들어선 이후에야 여성을 위한,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치카와는 바로 그 열쇠를 손에 넣고야 말겠다는 궁극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맹’활동기간을 통해 묵묵히 의회 및 정치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협회’의 실패가 히라쓰카에게는 의회정치에서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과 달리, 이치카와에게는 더 신중하고 효율적인 의회활동으로 이끄는 타산지석의 경험이 되었던 듯하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노력은 거의 성공적인 것으로 보였다. 만주사변 이후로 계속되는 일본의 전쟁이 아니었다면, 의회와 정치에 대한 그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V. 15년전쟁기 여성의 전쟁협력: ‘부선’을 위한 선택

만주사변 발발 직후 이치카와는 군부의 독주와 정부의 무력함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비정치세력으로 남아있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전쟁에 대한 부인의 생각은 남자와는 매우 다르”며,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부인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목적이 “군부를 억누르는 것”, “의회정치를 보다 제대로 만드는 것”에 있다고 보았고, ‘동맹’ 역시 이러한 주장을 피력했다. 그 결과 기관지 『부선』(婦選)은 1932년 3월 발행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파쇼화에 대한 우려, 의회주의 옹호는 만주사변 발발 이후에도 ‘동맹’의 기본적 태도였으며, 이러한 위기감이 오히려 여성단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⁴¹⁾

‘동맹’은 만주사변 이래 부선운동의 후퇴기에 즈음하여, ‘일상생활에 보다 밀착’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1933년의 제4회 대일본부선대회에서는 ‘쇼와 8년도(1933) 예산 검토’ ‘현재 정세에서 부선획득을 촉진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부인의 힘으로 자치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등, 이전에 비해 ‘구체적인 현실문제’를 의제로 삼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도쿄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도쿄도제안(東京都制案)을 지지하면서 시정개혁을 촉구하거나,⁴²⁾ 선거숙정운동 등에도 참여했다.

“우리는 우리의 부인참정권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운동을 버리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이를 통해 일반 대중부인의 정치적 관심을 환기함과 더불어 부인의 실력으로 그 해결의 결실을 사회에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⁴³⁾라는 입장으로부터, 쓰레기문제나 도매시장문제 등 구체적인 시정(市政)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같은 맥락에서 1937년에는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모

41) 鹿野政直, 「フェシズム下の婦人運動：婦選獲得同盟の場合」, 総合女性史研究会, 『日本女性史論集10 女性と運動』, 吉川弘文館, 1989, 244쪽. 인용문도 같은 논문에서 재인용.

42) 鹿野政直, 같은 글, 247~248쪽.

43) 市川房枝, 「今後の婦選運動の目標」, 『婦選』 7-9, 1933.9.

자보호법의 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⁴⁴⁾

1935년에 이르러 이른바 천황기관설로 대표되는 경직된 분위기가 일본 사회를 압도하면서 ‘부인문제는 (….) 퇴보하고 역전되어’ 부선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움직임을 찾기는 어려워졌다. 더 이상 여성계가 ‘부선’에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1936년 1월 기관지 『부선』의 이름도 『여성전망』(女性展望)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2.26사건의 발생과 제7회 전일본부선대회 개최 금지, 일독(日獨)방공협정, 일독이(日獨伊)삼국방공협정, 나아가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로 이어지는 험악한 정세 가운데에도 ‘동맹’이 파시즘과 나치즘, 나아가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은 주목할만 하다.⁴⁵⁾

하지만 ‘동맹’ 혹은 이치카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첫째, 정면에서 전쟁에 반대해서 감옥에 갈 각오를 할 것인가, 둘째, 운동에서 완전히 퇴각할 것인가, 셋째, 현상을 일단 긍정하고 어느 정도 협력할 것인가의 세 가지였다.⁴⁶⁾ 이치카와는 마지막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동안 ‘동맹’이 달성해온 성과를 지켜내고자 했다. 자신이 전쟁에 협력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기까지 이른 이상 이제 갈 데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 (….) 나 일개인의 감정이나 생활이라면 어떻게든 되겠지만, 부인과 아이 전체, 나아가 국가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다년에 걸쳐 동지들과 노력해온 우리의 입장에서, 이 **시국의 곤란을 어떻게 극복하여 장래의 행복을 건설**할까를 고려하여 실행으로 옮길 책무가 있다.⁴⁷⁾

이치카와는 자신의 결정이 일개인의 사사로운 차원이 아닌 여성계를 대표

44) 이상과 같이 일상생활에 밀착한 운동은 여성계의 ‘요구’이기도 하면서 반대로 국가에 대한 ‘협력’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즉 시정운동은 행정의 하청이 되기 쉬웠고, 모성보호운동은 전쟁기 인구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으며, 선거숙정운동은 훗날 익찬(翼贊)선거로 이어졌던 것이다(「婦選獲得同盟創立80周年記念フォーラム政治の権利を求めた女性運動を検証」, 『女性展望』 566, 2005.1, 10~11쪽).

45) 鹿野政直, 앞의 글, 1989, 254~255쪽.

46) 鈴木裕子, 『女性史を拓く2翼賛と抵抗』, 未来社, 1989, 49쪽.

47) 市川房枝, 「私の頁 時局に対して」, 『女性展望』, 1937.9.

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쟁에 협력하는 것이 이미 전쟁이 발생한 현실에서 당장의 곤란을 ‘극복’하는 길이자 ‘장래의 행복을 건설’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전쟁에 협력한 두 번째 이유로, 국가의 비상시국에서 공헌하는 것이 본래 ‘부선’이 목적으로 하는 바일 뿐 아니라, 그러한 실적이 부선 획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점을 들었다.

현재와 같은 정세에서는 소위 부선, 법률의 개정운동은 일층 곤란할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부선을 요구하는 목적**은 부인의 입장에서 **국가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정부와 또한 남자와 협력하려는 바에 있다. 따라서 이 국가에 있어 전례없는 **비상시국의 돌파를 위해 부인이 그 실력을 발휘하여 실적을 올린다면**, 이것이야말로 **부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까닭이며 법률상에 있어 **부선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이기도 할 것이다.⁴⁸⁾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에 즈음하여 여성이 ‘시정’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었던 것처럼, 보다 직접적으로 전쟁을 위한 후방지원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정부 혹은 남성과 협력하여 국가사회에 공헌하는 것이야말로 본래 여성들이 ‘여성참정권’을 획득하려 했던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이었다.⁴⁹⁾ 이치카와는 그러한 공헌을 인정받을 경우 제1차 세계대전 후 서양의 여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법률적으로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던 듯하다. 나아가 전쟁협력의 과정 속에서 느낀 기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다.

이제까지는 오로지 남자만으로 회합을 했거나, 설령 [부인이] 출석을 했어도 남편의 대리roman 인정되는 상태였던 것에 비한다면, 가정에서 주부의 지위 내지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부인으로서 크게 기뻐하는 바이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지방조직 안에서 부인이 남자와 마찬가지로, 혹은 부

48) 市川房枝, 같은 글.

49) 페미니스트 여성학자 스즈키 유코(鈴木裕子)는 이치카와가 ‘여성의 사회참여=해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큰 거부감 없이 전쟁협력으로 나아간 이유가 되었다고 본다(鈴木裕子, 앞의 글, 1989, 未来社, 51쪽).

차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한편으로 부인공민권 실현의 선구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⁵⁰⁾

이상과 같은 이유로부터 이치카와 등의 여성지도자와 여성단체들은 1935년 어용적 성격이 명백한 선거숙정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이처럼 여성들이 관제 혹은 어용적 운동이나 단체에 적극 참여하는 경향은 농촌이나 지방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방부인회에 관해서는 말할 것이 많지만, 이전에 자기 시간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농촌의 대중부인이, 만나질 동안 집에서 해방되어서 강연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부인해방”⁵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있어 전쟁협력의 활동은 평소 그들이 상상했던 ‘여성해방’의 모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던 셈이다.

1937년 8월 각의(閣議)는 국민정신총동원실시요강을 결정하고 10월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을 발족시켰다. 여성계에서는 대일본연합부인회, 대일본연합여자청년단, 대일본국방부인회, 애국부인회가 참여했다. 같은해 9월 이치카와의 주창으로 ‘동맹’ 등 8개 여성단체에 의한 일본부인단체연맹이 결성되었는데 그들의 활동은 첫째,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주식개선, 천막 탁아소 설치, 물품교환회 개최 등의 생활개선 계몽, 둘째, 매점매석 금지, 사치근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협력 계몽, 셋째, 여성의 갱내작업금지 완화 반대와 성병 예방 청원 등의 대(對)정부 요구, 대략 이상의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⁵²⁾

이후로도 이치카와는 관련 단체나 대회에 잇달아 참석했으며, 1938년에는 동맹이 중심이 되어 20여개 여성단체가 참가하는 시국부인대회를 개최하고 ‘황군에 대한 감사결의’를 채택하였다. 대회 식순에 국가제창, 황거요배, 전물장병 영령 묵도와 같은 행위 등이 포함되었던 사실에서 보듯, 당시 전시시국에 대한 여성계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는 명확했다. 다만 대회의 합의[申合]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전시기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협력의 행위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50) 市川房枝, 「國民精神總動員實踐網と婦人」, 『女性展望』, 1938.5.

51) 市川房枝, 『市川房枝自伝(戰前編)』, 新宿書房, 1971, 435쪽.

52) 国武雅子, 「戰時期の市川房枝」, 『歴史評論』 552, 1996.4, 37쪽.

<합의>

하나, 우리는 무분별한 매점을 경계하고 나아가 대용품과 국산품을 사용함
께 동시에, 그 품질개선, 가격공정을 생산자 및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둘, 가정에 금속 부스러기수집용 바구니 등을 설치하여, 자원애호와 폐품
활용에 노력함과 동시에, 수집망(蒐集網)의 관리를 당국에 요구한다.

셋, 우선 백미식을 폐지하고 영양개선에 노력함과 동시에, 성병과 결핵 방
지에 힘을 쏟으로써 총후(銃後)의 보건을 지킨다.

넷, 자녀의 교육과 보전에 노력하며 다음 세대 일본 시국에 악영향을 남기
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섯, 탁아소, 공동취사 기타 생활합리화를 진전시키고, 부인도 또한 노동
력의 보급을 담당함과 동시에, 국책으로서 모성보호를 실현하도록 노력한
다.

여섯, 상이군인 및 유가족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당국에 요구함과 동시에,
부인도 또한 그 분야에서 협력한다.

일곱, 부인단체는 마찰과 다툼을 지양하며, 어머니의 손과 어머니의 마음
을 사회에 침투시키도록 이 기회에 더욱 노력한다.⁵³⁾

이상에서 보이듯, ‘시국부인대회’라는 거창한 이름하에 열린 대회에서의
결의란, 대부분 ‘생활’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물자의 절약, 위생, 모성의
보호와 발휘와 같은 내용이 대부분으로, 이른바 일본의 총력전체제하에서 열
린 어용적 행사에서의 선언임을 모르는 사람이 이 내용을 읽는다면, 상이군인
을 언급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상적 수준의, 혹은 경제적으로 풍요롭
지 못한 개도국에서의 생활 계몽의 내용에 가까워 보일 것이다. 앞서 소개한
일본부인단체연맹의 주된 세 가지 활동을 비롯, 전시기 이치카와를 비롯한
여성지도자들의 전쟁협력의 활동 대부분은 이러한 생활 계몽에 집중되는 것
이었고, 전시기에 허용된 ‘시정 참여’와 같은 것은 그들의 염원이었던 ‘부선’
의 축소판, 혹은 사전 체험과도 같은 것이었다. 즉 부선 획득을 통한 ‘국정
참여’는 전쟁으로 인해 보류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전쟁은 여성들에게 ‘시
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53) 市川房枝, 앞의 책, 1971, 457쪽.

이후 여성계 내부에서 “부인운동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단지 정동(국민정신총동원)의 선봉만을 맡고 있는 것 아닌가.”⁵⁴⁾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이후 ‘동맹’을 비롯한 여성계는 총동원체제에 협력하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갔다. 1939년 부인시국연구회 설립에 이어 1940년 이치카와는 부인문제연구소를 설립하였고, 같은해 9월 ‘동맹’은 부인시국연구회 참가라는 형식으로 해산하고 말았다.⁵⁵⁾ 이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난 1941년 8월 기관지 『여성전망』도 폐간됨으로써 ‘동맹’은 16년에 걸친 활동을 마감했다.

총력전체제하에서 이치카와와 ‘동맹’이 보인 태도는 다소 이율배반적이다. “저항하면서, 협력하면서”라는 가노의 표현과 같이, 전쟁의 확대와 파시즘에 대해 비판하고 경계하면서도 당국이 요구하는 협력활동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혹시나 단지 전시의 억압적인 사회분위기나 당국에 의한 강제에 의한 것이었음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가능하지만, 여성참정권 달성이라는 목표를 고려한 여성 자신들의 전략적인 선택도 하나의 이유였음은 거듭 언급했던 바와 같다.

물론 일본 당국이 총동원체제하에 여성단체를 포섭하고자 끈질기게 노력했다라도, 이치카와를 비롯한 여성 리더 개개인은 스스로 현장을 떠나는 방식으로 ‘비협조’의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맹’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참정권을 실현했던 서양의 사례를 잇달아 소개하면서, 전쟁협력이 여성에 대한 정치참여 허용의 방식으로 보답받을 것이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만일 일본이 연이은 전쟁에서 자신들이 바라던 결과를 얻었다라면, 일본이라는 국가는 이들 여성들의 바람과 기대에 여성참정권 허용이라는 방법으로 부응했을까, 아니면 ‘희망고문’만을 계속했을 것인가.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추측으로 남게 되었다.

54) 松田解子, 「婦人運動への協力」, 『女性展望』, 1940.4.

55) 이치카와의 전쟁협력 문제에 천착했던 신도 구미코는 이치카와가 전폭적인 전쟁협력으로 선회하였던 시기를 1940년, 전향의 결정적 계기를 그의 중국방문에서 찾는다(進藤久美子, 앞의 책, 2015).

VI. ‘국가를 넘어서지 못했던’ 여성들의 운동사

1945년 8월 15일의 일본의 일방적 항복선언 후 단 열흘만인 8월 25일, 이치카와는 전후대책부인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을 재개하였다. 하지만 1947년 대일본언론보국회 이사 경력을 이유로 공직추방 대상으로 지명되었고, 이로 인해 1950년 공직추방에서 해제되기까지 약 3년에 걸친 낭민생활을 겪어야 했다.

패전 후 나 자신은 전쟁협력자로서 3년 7개월 동안 추방을 당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전쟁에 협력했던 것은 사실이니까 그 책임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명예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 나는 전쟁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나는 그 시대의 그러한 상황하에서 국민의 일인인 이상, 당연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수치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제가 틀린 것일까요.⁵⁶⁾

전시기의 협력활동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는 여타의 인물들과 달리 자신의 전쟁협력에 대해서도 비교적 숨김없이 고백과 자료를 남긴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받는 이치카와이지만, 특히 그가 자신의 전쟁협력의 동기로서 ‘국민의 일인’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근대 일본의 여성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별다른 저항없이 전쟁협력의 길로 나아갔는지,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근대 일본 여성운동의 역사는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분투했던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메이지시대 이래 근대 일본에서 여성은 교육면에서 보자면 훌륭한 국민을 낳아서 양성하기 ‘위한’ 존재로 간주되었고, 민법상으로는 경제적으로든 가족관계에서든 ‘무능력자’로 간주되었다. 국가가 모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혹은 해줄 것이라는 히라쓰카의 순진한 기대는, 모성보호는커녕 아주 사소한 내용을 담은 청원을 가지고 의회를 찾았을 때조차 냉담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이치카와 역시 같은 좌절을 겪었지만, “부선은 열쇠다”라는, 즉 여성의 참정권 획득이야말로 여성을 위한

56) 市川房枝, 앞의 글, 1979, 68-69쪽.

모든 정책의 ‘시작’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이를 위한 의회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기 전까지, 이들의 기대는 거의 응답 받을 것으로 보였다.

전쟁협력의 대가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수여하겠다고 국가가 직접 약속을 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에서의 사례를 통해 스스로 학습한 결과 그들은 여성참정권 획득의 지름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일본이 중일전쟁 도발과 하와이 공습을 통해 전선을 확대하면서 전국민의 일치 단결된 전쟁협력을 요구했을 때, 여성들은 이를 비판하고 협력에 주저하기도 했지만, 국가가 어려울 때에 적극 협력한다면 자신들도 정치적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들 근대 일본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행복을 추구를 추구할 때, 혹은 국가에 대한 협력과 애국을 논할 때, ‘일본이라는 국가를 넘어서는’ 보편적이고 상대적인 시야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대와 같은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정보 입수, 해외 경험에 따른 시야의 확대가 부족하다는 - 너무도 당연하여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는 - 사실을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개항 후 최초로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메이지교육’의 세례를 받았다는 시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 더구나 이들이 여성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본격적인 여성운동을 벌이던 1920~1930년대는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와 군축, 중국에서의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여 팽창정책을 펼쳐 국제사회로부터 점차 고립되어 가던 시기였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애국주의 세례를 받은 대부분의 여성운동가뿐 아니라 소수의 해외 체류 경험을 가진 이들조차 해외여행 이후 더욱 강한 애국심을 드러내며 전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던 것은,⁵⁷⁾ 당시 이러한 큰 구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일본이 부당하게 국제사회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있다는 피

57) 해외 경험 후에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했던 대표적 사례로는 이치카와 후사에, 요사노 아키코와 더불어 생활과 교육에 관한 여성 계몽운동가였던 하니 모토코(羽仁もと子, 1873-1957) 등을 들 수 있다. 근대 일본 여성의 해외경험이 그들의 사상과 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해의식이 작용했던 때문으로 여겨진다.

‘일본이라는 국가를 넘어서는’ 보편적 시각을 가질 수 없었던 이들은, 일본에 대한 비판을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일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동일시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협력의 정당성을 내면화할 수 있었다. 이들이 일본 외의 타자를 최초로 —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이었던 식민지의 주민들과 달리 — 새로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진정한 타자로서 가장 강렬하게 인식하게 되었던 것은 일본의 패전으로 전쟁이 끝난 후 점령군으로 일본에 상륙한 연합국이 아니었을까.

자신들이 그토록 매달렸던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이를 제압하고 외부에서 등장한 GHQ가, 일본 여성들의 권리 신장과 참정권 획득을 실현시켜 주었을 때, 오로지 일본이라는 국가 중심이었던 이들의 세계관에 커다란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후 일본 여성들이 여성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평화운동에 열의를 보였던 것은 그러한 과거의 역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⁵⁸⁾ 패전으로 인한 종전은 일본 여성에게 여성참정권을 비롯한 여성해방을 실현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일본 여성들로 하여금 일본이라는 국가를 넘어서 타자의 시선까지도 아우르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돌아보게 했다는 점에서, 일본 여성운동의 전기가 되었던 셈이다.

58) 이은경, 「전후 일본의 각성하는 ‘모성’과 평화: <일본모친대회>(1955~)의 태동과 초기활동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8, 2013.12.

❖ 참고 문헌

1) 일차사료

- 『女性同盟』(1920~1922), ドメス出版(復刻版), 1985.
 『婦選』第一~第十九卷(『女性展望』)、不二出版(復刻版), 1992.
 『婦人公論』(1925~1941).
 市川房枝, 『市川房枝自伝 戦前編』, 東京: 新宿書房, 1974.
 _____, 『市川房枝集』1, 東京: 日本図書センター, 1994.
 市川房枝編, 『婦人問題資料集成』第二卷, 東京: ドメス出版, 1977.
 与謝野晶子, 『与謝野晶子評論集』, 東京: 岩波書店, 1985.
 香内信子, 『資料 母性保護論争』, 東京: ドメス出版, 1984.

2) 관련연구

- 이은경, 「다이쇼기 여성해방의 사상과 논쟁」, 김용덕 엮음, 『일본사의 변혁기를 본다』, 지식산업사, 2011.
 _____, 「다이쇼기 일본 여성운동의 조직화와 노선갈등」, 『동양사학연구』 116, 동양사학회, 2011.9.
 _____, 「전후 일본의 각성하는 ‘모성’과 평화: <일본모친대회>(1955~)의 태동과 초기활동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8, 2013.12.
 히로세 레이코, 「일본의 ‘신여성’과 서양여성해방사상 — 엘렌 케이 사상의 수용을 둘러싸고」, 『여성과 역사』 5, 2006.
 菅原和子, 『市川房枝と婦人参政権獲得運動—模索と葛藤の政治史』, 東京: 世織書房, 2002.
 国武雅子, 「戦時期の市川房枝」, 『歴史評論』 552, 1996.4.
 _____, 「戦後女性運動の起点—市川房枝を中心に」, 『人間文化研究』, 2001.
 堀サチ子, 「十五年戦争下の国民統合政策と女性」, 『歴史評論』 552, 1996.
 今井小の実, 『社会福祉思想としての母性保護論争』, 東京: ドメス出版, 2005.
 女性史総合研究会編, 『日本女性生活史4—近代』,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90.
 歴史評論編集部編, 『近代日本女性史への証言』, 東京: ドメス出版, 1979
 鈴木裕子, 『女性史を拓く2—翼賛と抵抗』, 東京: 未来社, 1989.
 鹿野政直, 「ファシズム下の婦人運動—婦選獲得同盟の場合」, 『近代日本の国家と思想』, 東京: 三省堂, 1979.
 鹿野政直, 「婦選獲得同盟の成立と展開—『満州事変』勃発まで」, 『日本歴史』 319,

1974.11.

西川裕子, 『近代国家と家族モデル』, 東京: 吉川弘文館, 2000.

小山静子, 『良妻賢母という規範』, 東京: 勁草書房, 1991.

井手文子, 「日本における婦人参政権運動」, 『歴史学研究』 201, 1956.11.

進藤久美子, 『市川房枝とく大東亜戦争〉: フェミニズムは戦争をどう生きたか』,
東京: 法政大学出版局, 2015.

❖ ABSTRACT

Maternity, Suffrage, War, and State: A Diachronic Review of the Women's Movements in Modern Japan

Lee, Eun-Gyong

This study aims to diachronically explore the women's movements in modern Japan by focusing on three key words, 'maternity,' 'suffrage,' and 'war,' in uncovering how these concepts relate to Japan as a state. In particular,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policies toward women no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ate, but rather from women's perspective and evaluates their expectations toward the 'state' thorough the activities of Fusae Ichikawa and Raichō Hiratsuka.

Hiratsuka, who was devoted to establishing the 'state protection of maternity,' ended up casting away such expectations toward the state after the failure of the petition movement developed by the New Women's Association. On the other hand, Ichikawa, encouraged by the success of women's suffrage movement in the U.S., remained active in the petition movement in the hope of attaining female suffrage. Because of this, Ichikawa was more vulnerable to the requests by the national authorities for the cooperation in war efforts—event though most of her activities were contained within the redressing of everyday life issues. The expectations toward the 'state' was a principal driving force of women's movements in modern Japan, yet at the same time it was also the reason why—as purging of Ichikawa symbolizes—they came to be stigmatized with the promotion of invasive war.

Key Words

maternity, suffrage, war, New Women's Association, Raichō Hiratsuka, Fusae Ichikawa, war cooperation

논문접수일: 2016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6월 07일

게재확정일: 2016년 06월 08일